

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
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충청북도의회
산업경제위원회

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이상정 의원 등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- 발의일자 : 2020년 10월 5일
- 회부일자 : 2020년 10월 6일

3. 제안이유

- 농업인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농촌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기금운용이 필요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, 운용기금 부족으로 적립기금을 사용하도록 하며,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회 구성을 변경하고자 함

4. 주요내용

- 가. 기금의 존속기한을 “2020년”에서 “2025년” 까지 5년 연장(안 제3조)
- 나. 운용기금 부족에 따른 적립기금의 원금 사용 조항 신설 및 이자수입금 10% 재 적립 조항 삭제(안 제4조, 안 제10조)
- 다.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회 위원장을 농업기술원장에서 기술지원국장으로 변경(안 제5조)
- 라.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」에 따라 기금의 결산보고서 작성 기한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로 변경(안 제14조)

5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우경수)

가. 제출배경

- 농업인단체가 자립적으로 농촌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금운용이 필요함에 따라 존속기한 연장
-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이자율 하락으로 2013년 대비 현재 이자수입은 60%, 이자수입 감소에 따른 고유목적사업비는 58% 수준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매년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

나. 주요 개정내용

-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(안 제3조)
 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」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하여 5년(2020년 → 2025년까지)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고자함
- ※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제3항에 따라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침(20.9.11.)

[기금의 존속기한]

<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>

- 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용되는 기금과 「지방공기업법」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,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.
-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-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·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- 운용기금 부족에 따른 적립기금의 원금 사용 조항 신설 및 이자수익금 10% 재 적립 조항 삭제(안 제4조, 안 제10조)
 - 장기적인 경제침체와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생산과 소비가 동시다발적으로 멈춰 서며 세계경제가 빠르게 추락하고 있으며, 이렇게 추락하는 경제 상황 속에서 금리 인하가 단행되고 있음

-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은 적금으로 운영 중이며, 이자율 하락으로 인해 매년 사용가능한 운용기금은 줄어들고 있음

[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]

(단위 : 천원)

구분	2013년	2014년	2015년	2016년	2017년	2018년	2019년
적립금 현황	5,669,392	5,992,824	6,308,799	6,318,645	6,331,148	6,342,576	6,356,567
이자율	2.86%(신한)/ '12.7.2~'15.7.2 (100%)		1.41%(신한)/ '15.7.2~'18.7.2 (49.3%)			1.62%(신한)/ '18.7.2~'21.12.31 (56.6%)	
이자 수입	163,342 (100%)	170,505 (104.4%)	138,317 (84.6%)	88,846 (54.4%)	88,979 (54.4%)	94,861 (58%)	102,836 (63%)
고유 사업비	168,865 (100%)	152,110 (90.1%)	127,390 (75.4%)	84,000 (49.7%)	83,000 (49.1%)	88,500 (52.4%)	98,700 (58.34%)

- ※ 이자수입 :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이자율 하락으로 2013년 대비 63% 수준
- ※ 고유사업비 : 이자수입 감소에 따라 사업비도 2013년 대비 58% 수준

○ 심의위원회 위원장 변경 및 기금운용관 변경(안 제5조 및 안 제13조)

-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위원장을 농업기술원장에서 기술지원국장으로 변경
-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의거 기금운용관을 농업기술원장에서 기술지원국장으로 변경

○ 결산보고서 작성기한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로 변경(안 제14조)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」 제8조 따라 기금결산보고서를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변경

[결산보고서 작성기한]

<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>

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,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, 새로운 비목(費目)을 설치할 수 없다.

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다. 종합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농업인단체가 자립적으로 농촌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 수행을 위해 지속적인 기금운용이 필요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,
- 운용기금의 부족으로 농업인단체의 자생능력 향상을 위한 고유목적사업 추진이 어려워 적립기금 원금 사용 조항 신설 및 이자수익금 10% 재 적립 조항 삭제는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
- 또한, 단체별 총 적립기금의 3% 이내로 상한을 두어 무분별한 원금 사용으로 인한 원금고갈 문제를 차단 할 수 있어 운용상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
- 다만, 단체별 3%의 일률적인 적용이 아닌 적립기금의 비율에 맞춘 적정한 기준 마련도 필요할 것을 보임